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안)

2016. 4.



목 차

I. 매뉴얼 개요 및 활용방법	1
1. 매뉴얼 개요	1
2. 활용 방법	3
II.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4
1. 물리적 시설 안전점검사항	4
2. 시설 운영 시 안전점검사항	41
3. 비상시 조치사항	7
1)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7 1
2) 비상상황 발생 시 핵심 대처 사항	7 1
3)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사항	71
4) 신고전파 요령	2
5) 행사 전 비상대비 안내 요령	52
6) 대피 유도 요령	3
7) 응급처치: 심폐소생 요령	62

〈부 록〉

부록 1.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안전점검표	8 2
부록 2. 안전점검 항목별 사례 자료	9 2
부록 3. 안내판 설치 및 피난안내도 작성 요령	1 3
부록 4. 비상연락처 목록 작성 요령	3 3
부록 5. 출동한 긴급서비스기관에 제공해야 할 자료(예시)	4 3
부록 6. 체육시설업 안전기준	7 3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7 3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9 3
3) 안전 위생 기준	0 3
부록 7. 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 조항	3 4
부록 8. 전기안전수칙	5 4
부록 9. 가스안전수칙	7 4

I 매뉴얼 개요 및 활용방법

1. 매뉴얼 개요

1) 매뉴얼 개발 목적

- 본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은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되도록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체육시설을 분야별로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 또한 체육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시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평시에 비상대처요령을 숙지하고 훈련하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매뉴얼의 주요 구성

- 본 매뉴얼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된 설치기준(부록 6)을 준수하여 건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운영 상 안전상태, 작동상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 본 매뉴얼은 물리적 시설의 안전점검사항, 운영 상 안전점검사항, 비상시 조치사항 등으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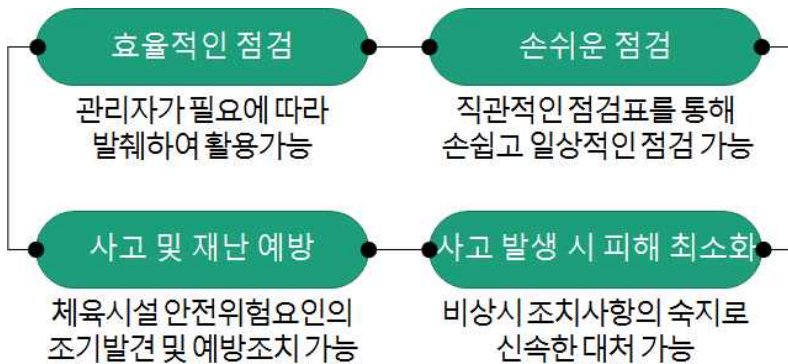


3) 매뉴얼의 특징과 장점

-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손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점검표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 체육시설의 건축, 지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도 체육시설과 설비의 간단한 안전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상태와 위험한 상태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부록 2)
- 체육시설 운영 시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화재대비 안전점검표와 시설에서 행사 개최 시 점검해야 할 안전점검표를 계약 시 점검항목, 공통점검항목,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의 점검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화재, 지진,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신고전파, 대피유도, 응급처치 및 방송문안 등 비상 시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 소규모 시설을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 표지판 서식 등의 부록을 통해 활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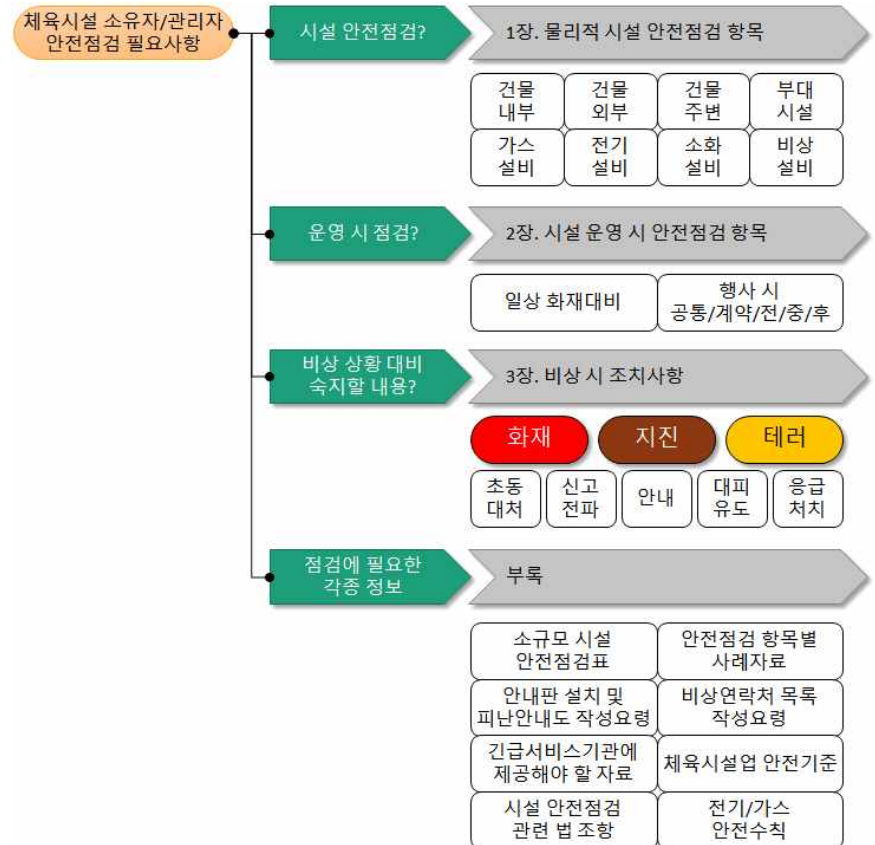
4) 활용 시 기대 효과

-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점검하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활용 방법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안전관리 필요사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 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양호한 경우에는 상태를 유지하고, 불량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의뢰하여 추가로 점검 및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II 체육시설관리지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1. 물리적 시설 안전점검사항

<표 1> 체육시설물 안전점검표 (건물내부)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건물 내부	기둥	손상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벽	손상 균열			
		누수, 백태			
		돌출 안전상태			
		벽면 부착물(액자, 책장등) 안전상태(지진대비)			
	보	손상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천정	누수, 백태			
		마감재 탈락, 노후화			
		텍스, 몰탈, 전등 등 안전상태			
	바닥	손상 균열			
		하중에 의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			
		돌출 안전상태			
	창호	창호(문짝, 문틀)의 탈락 위험성			
		창호 유리의 안전상태			
		창호 부착물(방범창, 방충망 등)			
	경기무대 (링)상부	조명 등의 안전상태			
	경기무대 (링)하부	무대 구조물의 안전상태			
	화장실	내부 경량 칸막이의 안전상태			
		내벽타일 탈락 등 안전상태			
위생기구(변기, 세면대 등) 안전상태					
계단	바닥, 벽의 돌출 등 안전 상태				
	주계단 균열 상태				
	미끄럼 방지턱, 낙하방지 그물 등				
난간	난간의 흔들림				

* 체육시설 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함

□ 점검대상

- 건축물: 체육시설 내 모든 건축물
- 부대시설: 체육시설 주변 옹벽, 석축, 경사지, 배수로 및 담장 등 모든 부대시설
- 기타분야: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및 비상 설비 등

□ 점검요령

- 육안조사 위주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상 현상 발생여부를 조사
- 체육시설 내 모든 건축물의 내·외부 및 주변시설에 대하여 이상 현상 발생여부를 조사
- 체육시설 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현상이 발생된 내용을 기입
- 점검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상 항목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

□ 기타 참고사항

- 본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시설실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관련 항목만 선택하는 등 재구성하여 사용가능
- 건물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부록 1의 <소규모 체육시설용 안전점검표>를 활용 가능
- 운동 종목별 특정 안전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록 6을 참조

<표 2> 체육시설물 안전점검표 (건물외부/주변)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건물 외부	옥상 /지붕	옥상 방수, 마감 등 안전상태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지붕 안전상태			
	슬래브	손상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외벽	각종 균열			
		누수, 백태			
		기울기 발생			
	정문	정문 안전상태			
건물 주변	절개지	절개지(切開地)의 안전시설설치 등			
	낙석위험 지역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 치 여부			
	노후축대	보수, 보강, 기타 조치 상태 등			
	옹벽	수직, 수평, 경사 균열 발생 상태			
		균열 부분 누수, 백태			
		옹벽 배면 토사 침하 현상			
		옹벽 및 석축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비탈면	경사면 부분 균열 발생			
		경사면 부분 지하수 유출			
		토사유실 위험성			
수목의 기울어짐					
토사면 배수시설 상태					
담장	붕괴위험성				
	담장주변 토사적치				
시설 내 통행로	차량 통행로 시설 안전상태				
	보행자 통행로 시설 안전상태				

<표 3> 체육시설물 안전점검표 (부대시설 및 가스전기설비)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부대 시설	승강기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필증 부착여부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 부			
	에스컬 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검사 여부			
		에스컬레이터 정상작동 여부			
	기계식 주차시설	기계식 주차시설, 주차타워 안전상태			
	물탱크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물탱크 및 정화조 뚜껑의 안전상태			
	조명탑	조명탑의 안전상태			
		환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기타 부대시설	시설의 연결, 변형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여부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가스 설비	가스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 주 배관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는 지의 여부			
	가스누설 경보기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여부			
		정상작동 여부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가스 설비	가스 검지기	공기보다 가벼운 연료(LNG)사용시 가스 검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공기보다 무거운 연료(LPG)사용시 가스 검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0.3m 이내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수신기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여부			
	가스밸브	노후상태, 누출점검			
	배관	매설 및 고정상태			
	가스관	부식 및 손상여부			
		가스관 주변 인화물질 유무 (콘센트, 멀티탭 등 불꽃이 될 수 있는 전기용품 포함)			
	호스	LP가스 취급시 호스는 3m 이내로 제한 확인			
	안전표어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부착여부			
	전기 설비	누전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배선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 용여부			
전기기구 접지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전기실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 정여부			

<표 4> 체육시설물 안전점검표(소방비상설비)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소방 설비	화재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	설치된 장소의 통행 또는 피난에의 장애여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여부			
		구획된 실 마다 설치여부			
		보행거리가 규정치 이하인가 여부 -소형: 20m, 대형: 30m 마다 1대			
		지시압력치의 적정 여부			
		소화약제의 동결·변질 여부			
	옥내소화전	안전핀 봉인의 탈락 여부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앞 장애물 및 물건적체 여부					
방화셔터	정상작동 여부				
비상 설비	비상구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앞 장애물 및 물건적체 여부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여부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구가 잠겨 있을 경우, 피해가 커져 참사를 초 래할 수 있음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비상 설비	비상구 유도등	정상작동 여부			
		장애가 되는 등화광고게시물이 없는 지의 여부			
	대피통로	정상이용 가능여부			
		장애물 또는 물건적체 여부			
	대피 유도등	파손, 변형, 탈락 상태			
		정상작동 여부			
		장애가 되는 등화광고게시물이 없는 지의 여부			
	피난대피도	파손, 변형, 탈락 상태			
	완강기	설치된 위치의 안전상태			
		정상작동 여부			
	시각 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휴대용 비상조명등	정상작동 여부			
		배터리 교체 필요 여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 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			
	자가발전 설비	정상작동 여부			
방송설비	정상작동 여부				
안전표지판	파손, 변형, 탈락 상태				

※ 소방·비상설비 점검포인트¹⁾

□ 소화기

- 설치거리
 - 각 층마다(보행거리와 무관) 설치해야 한다.
 -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축압식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 지시 압력계의 지침(7.0~9.8kg/cm²)을 확인한다.
(충전압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구매 할 것.)
- 가압식 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점검순서
 - 소화기의 캡(뚜껑)을 열어서 위로 뽑아 올린다.
 - 가스도입관, 방출관, 가압가스 용기가 모두 달려온다.
 - 가압용 가스용기 내 가스가 액화탄산가스인 경우는 가스용기를 가볍게 두드리면 정상인 경우는 병속에 물을 넣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봉판이 정상이더라도 용기속의 가스가 누설된 상태이므로 교체하여야 한다. 질소가스인 경우는 가압용 가스 용기를 스페너를 분리하여 봉판이 파괴침에 의해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 안전핀 점검순서
 -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안전핀의 봉인 여부를 확인한다.
 - 봉인이 풀렸을 때에는 일단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 소화기 외부에 표기되어 있는 소화기의 총 중량과 실제의 소화기 중량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 그 밖의 소화기 점검시 주의사항
 - 축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압력이 가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런 조치없이 소화기 뚜껑을 열어서는 안된다.
 - 가압식은 한 번 사용시 누름레버를 놓아도 약제가 방출하므로 과잉방

1) 출처: 한국소방안전학회

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방사 중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스만 방출시킨다.

- 가압식은 사이폰관(약제 흡입관)에 밸브를 통한 습기 침투로 인한 약제의 고(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일이나 은박지 등으로 밀봉을 하였으나 밀봉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제가 굳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제의 고화상태를 확인한다.
- 축압식은 누름 레바를 놓으면 밸브가 막히므로 한 번 사용 후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부분에 있고, 중량을 측정하여 현자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밸브와 밸브캡 사이에 미세한 분말이 끼어서 압력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화기마다 소화기 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화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8년 이상시 압력이 정상이어도 교체를 권장한다.

□ 대피 유도등

○ 유도등의 조도

구분	측정위치	조도
피난구유도등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	쉽게 식별(문자색채)
통로유도등	벽체에 설치	수직 하방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
	바닥 매립	직상부 1m 높이
객석유도등	통로바닥의 중심선	0.2[lx] 이상

○ 유도등의 표시면과 표시사항

구분	표시면	표시사항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비상문, 비상계단, 계단
통로유도등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비상문, 비상계단

○ 유도표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해야 한다.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비상조명등의 점검포인트

-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Lx) 이상
-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2. 시설 운영 시 안전점검사항

<표 5> 체육시설 화재대비 안전점검표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	-----	------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일상 점검 사항	화재 대비	피난 영상물의 정상 상영 여부(수시 상영시)				
		방화문 앞 물건 적체 상태				
		방화셔터 하부에 가구류, 집기류 등 적체 상태				
		비상구, 피난로 관리상태				
		비상구, 소화기, 소화전 등의 안내판 위치				
		소방차 진입로 관리상태				
		가스용기 주변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비상 대비	비상시 출동한 긴급서비스기관(경찰, 소방 등)에 제공해야할 자료 준비 여부(부록5 참조)			

<표 6> 체육시설 행사 시 안전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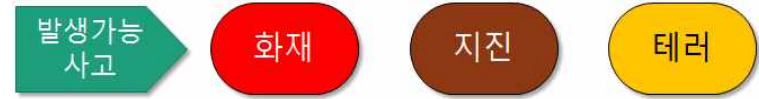
소속	점검자	점검일자
----	-----	------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행사 안전 점검 항목	계약	행사 대관계약 시, 행사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였는가			
	공통	안전관리요원을 취약장소에 배치하였는가			
		비상구, 대피경로, 소방장비,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점검, 확인 하였는가			
		행사장 내 관객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였는가			
		무대 주위에 안전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안전관리요원과 직원은 화재, 정전 등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요원과 직원에게 초기화재 진화, 구급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수용인원 규모에 맞는 비상시 대피처를 확보하였는가			
		수용인원과 체육시설 구조, 대피 소요시간에 맞는 대피경로를 확보하였는가			
		대피경로 상에 장애물은 없는가			
		대피경로 상에 잠겨있는 출입문은 없는가			
	대피경로를 알리는 안내판이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비상시 경기·행사 중지 및 재시작 시기와 그 판단 및 결정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가(최단거리 위치 여부 확인)				
	행사 직전	안전관리요원 배치되었는가			
		모든 구조물이 손상, 붕괴, 변형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출구, 비상구, 각 구역 게이트들과 관중석 연결통로 게이트 등이 잘 작동하는가 (전기문 등 원활한 작동)			
		모든 입구와 출구 경로, 비상구가 장애물 없이 깨끗하고, 이동 시 위험이 없으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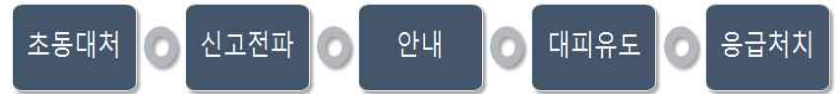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행사 안전 점검 항목	행사 직전	가연성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은가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두는 쓰레기통은 안전한가			
		소방 장비가 지정된 위치에 사용이 용이하게 잘 비치되어 있는가			
		일반 관중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가 적절하게 봉쇄되어 있는가			
		경기장에 던지는 무기로 사용될 만한 물건들은 없는가			
		방향표지판이 지정된 자리에 있는가			
		안내표지판과 부속품이 안전한가 또한 적절하게 위치해 있는가			
		경기·행사에 필요한 임시 장비들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대규모 이용객 통제위한 대기 칸막이 등 설치 여부			
		행사 중		안전관리요원이 제자리에 있는가	
행사장 이동통로가 확보되었는가					
경기장 주위 안전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선수 대기실 및 이동 동선이 관리되고 있는가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은가 또한 안전한 수거용기로 처리되었는가					
물건들이 이동경로, 출입구 혹은 피난경로에 쌓여있지 않은가					
모든 통로와 출구, 비상 시 대피경로가 장애물 없이 깨끗한가					
행사 후		관중의 퇴장이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제자리에 배치되었는가			
		선수들의 이동통로가 확보되었는가			
		관중이 안전하게 퇴장, 해산하였는가			
		경기장의 손상 혹은 변형의 흔적이 있는가			
		가연성 쓰레기가 안전한 수거용기로 깨끗하게 처리되었는가(제거 혹은 보관)			
		우려되는 문제들이 다음 행사 전에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록되고 정리되었는가			

3. 비상시 조치사항

1)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2) 비상상황 발생 시 핵심 대처 사항



3)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사항

(1) 화재발생시 대처 사항

① 초동 대처

- 소규모 화재는 소방대를 기다리는 동안 소화기, 소화전 등 자체소화시설을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규모 화재나 확산되고 있는 화재를 진화하려고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 불이 붙은 면적이 0.2㎡이상인 화재,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연성 화학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 소화기 1대로 진화가 어려운 화재는 건물 내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할 때 화재의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는 것이 좋다. (잠그지 않는다.)

② 화재 신고

- 119에 화재발생을 신고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다음, 상황을 전파한다.
- 정확하고 침착하게 화재위치를 알린다.

- "여기는 ○○구 ○○로 7번 건물, ○○체육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와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면 더욱 좋다.

③ 안내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을 이용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한다.
- 대피 행동요령, 사고 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이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비상방송을 실시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방송순서는 '화재층 → 위층 → 아래층' 순으로 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재 발생 시 방송문안 예시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절차에 따라 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시에 비닐봉지나, 젖은 물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가까운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라 건물 밖으로 천천히 대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④ 대피 유도

-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필요성을 알린다.
- 층별로 대피가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가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 대피에 필요한 물품(물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토록 홍보한다.
- 모든 구성원의 대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을 형성하여 이동한다.

(2) 지진발생시 대처 사항²⁾

① 초동 대처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한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승강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참조).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 등이다.

② 지진피해 신고

- 119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전파한다.
- 지진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119에 정확하고 침착하게 화재위치를 알린다.
 - "여기는 ○○구 ○○로 7번 건물, ○○체육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와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면 더욱 좋다.

③ 안내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을 이용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한다.
- 지진은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지진이 멈춘 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안내방송을 실시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피 행동요령, 사고 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이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

2)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시 행동요령

내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지진 발생 시 방송문안 예시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금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침착하게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안전관리 요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나 떨어진 전선 등 기타 불안정한 물체나 잔해에 유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④ 대피 유도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내한다.
-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필요성을 알린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층별로 대피가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가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 대피에 필요한 물품(물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토록 홍보한다.
- 모든 구성원의 대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을 형성하여 이동한다.

(3) 테러관련 대처 사항

① 초동 대처

가) 폭파, 살해 협박전화 접수 시

- 전화를 끊지 말고 전화를 건 사람이 계속 말하도록 유도, 시간을 끌면서 녹음(가능한 경우)
- 전화를 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제공하는 단서에 유의하며(성별, 연령, 발음, 억양 등) 의도, 협박동기 및 기타 언급사항을 그대로 기록하고 통화가 끝나는 즉시 지휘보고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나) 폭발물, 화생방 테러 의심물품 발견

- 발견 즉시 관계 기관과 방재실에 신고, 전문가 도착 전까지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접근 금지 조치한다.
- 화생방 테러 의심물질의 경우, 옷 또는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두고, 확산방지를 위해 에어컨, 환기시설 등을 정지시킨다.

다) 폭탄테러 발생시

- 신체보호를 위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도록 안내한다.
- 2차 폭발에 대비,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토록 이용객을 유도한다.

라) 화생방 테러 발생시

- 겹옷이나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실외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고, 야외일 경우 고층건물이나 고지대로 유도한다.
- 오염된 지역에서는 식수나 음식을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다.
- 방독면이나 산소호흡기 등 구급장비는 안전요원들이 우선 착용하여 대피를 유도하면서, 이용객들에게도 배포한다.

마) 인질납치 발생시

- 체육시설 내 이용객이 인질로 납치당했을 경우 유관기관의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침착하게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에 순응한다.

② 신고전파

- 신고처 : 국번없이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119(소방)중 1개소
- 인터넷: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좌측상단 111신고센터 테러 아이콘
- 신고내용
 - 신고자 이름, 소속, 현위치, 테러협박 등 의심스러운 내용과 이유를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한다.(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현장 위치 설명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특징있는 도로, 건물명 및 층수를 설명한다.
 - 거동 수상자 신고시 그 사람의 옷차림, 외견상 특이점, 행동상 수상한 점을 정리해서 신고한다.
 - 물품이나 차량을 신고시에는 크기나 색깔, 재질,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 유의사항
 - 신고 시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대상자 또는 내용물이 의심스러운 물품, 차량 등을 감시하면서 신고한다.
 - 거동 수상자 신고 시 그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신고하되 간헐적으로 대상자의 동태를 파악한다.
 - 의심스러운 물품, 차량을 발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대상과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벽이나 기둥 등 장애물 뒤에 몸을 숨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 백색가루 등 생화학 테러 의심물질인 경우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시설물 내 일반인을 우선 대피시킨 후 신고한다.

③ 안내

- 테러가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을 이용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한다.
- 테러의 성격에 따라 안내방송의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인질 납치 등의 발생 시, 안내방송이 납치범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 안내방송을 실시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피 행동요령, 사고 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이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폭탄 테러 발생 시 방송문안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 내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체보호를 위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 주십시오”
2차 폭발에 대비해, 미리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나 떨어진 전선 등 기타 불안정한 물체나 잔해에 유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화생방 테러 발생 시 방송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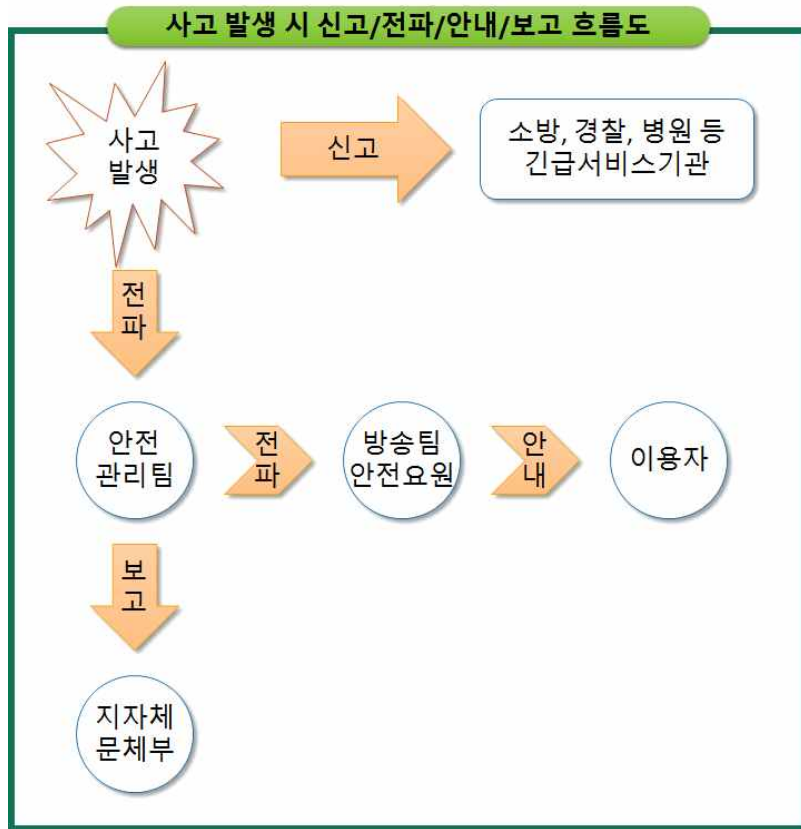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 내 화생방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걸옷이나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실외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④ 대피 유도

-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필요성을 알린다.
- 층별로 대피가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가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 대피에 필요한 물품(물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토록 홍보한다.
- 모든 구성원의 대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을 형성하여 이동한다.

4) 신고전파 요령

-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자 혹은 목격자는 긴급서비스기관(소방, 경찰, 병원 등)에 신고하는 한편, 체육시설 안전관리팀에 전파해야 한다.
- 안전관리팀(혹은 안전관리자)은 장내 방송팀과 안전요원에 전파하여 이용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팀(혹은 안전관리자)은 상황을 취합하여 지자체 및 문체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전에 비상연락처 목록을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부록4. 비상연락처 목록 작성 요령 참조)



5) 행사 전 비상 대비 안내요령

- 행사 시작 전에 관객에게 안전관련 안내방송을 하도록 한다. 출구 위치 및 안전관리요원 위치, 비상시 대피요령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행사 전 비상대비 안내 방송문안

“경기(행사) 시작 전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용객 여러분께서 위치하고 계신 곳의 출구는 동측, 서측, 남측에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안전관리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대피 유도 요령

(1) 자력대피가 곤란한 이용자의 대피지원 절차

-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중증환자 부터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킨다.
- 휠체어 사용자는 직접이동 시키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안전구역으로 옮긴다.
- 장애인용 대피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층으로 이동시킨다.

(2) 대피 후 행동요령




- 지정된 대피장소에 집결한 후 인원을 파악한다.
- 인원 파악 후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으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에게 대피하지 못한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가능한 경우)
- 대피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가까운 이용자들끼리 이야기하여 안정감을 찾도록 배려한다.

(3) 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대피를 위해 사전에 층별로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비상 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한다.
- 야간에 대피유도인력이 부족함을 대비하여 인근의 대피협력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훈련을 가져 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거주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있어 위급상황에 대비한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인근지역의 의용소방대원과 대장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여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7) 응급처치 : 심폐 소생 요령³⁾

	<p>1. 심정지 확인</p> <p>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p>
	<p>2. 도움 및 119 신고요청</p> <p>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p>
	<p>3. 가슴압박 30회 시행</p> <p>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똑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p>

	<p>4. 인공호흡 2회 시행</p> <p>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p>
	<p>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p> <p>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p>
	<p>6. 회복자세</p> <p>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p>

3)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부록 : 참고자료

부록 1.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안전점검표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개선 조치계획 (비고)
건물 내부	기둥	손상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노출 등			
	벽	손상 균열, 누수, 백태, 돌출 등 안전상태			
		벽면 부착물(액자, 책장등) 안전상태(지진대비)			
	보	손상 균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			
	천정	누수, 백태			
		마감재 탈락, 노후화			
	바닥	텍스, 몰탈, 전등 등 안전상태			
		손상 균열			
	창호	하중에 의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돌출 안전상태			
		창호(문짝, 문틀)의 탈락 위험성			
	화장실	창호 유리의 안전상태			
		창호 부착물(방범창, 방충망) 안전상태			
창호 유리의 안전상태					
계단	내부 경량 칸막이의 안전상태				
	내벽타일 탈락 등 안전상태				
	위생기구(변기, 세면대 등) 안전상태				
난간	바닥, 벽의 돌출 등 안전 상태				
	주계단 균열 상태				
소방 설비	계단 부착물(미끄럼 방지턱, 낙하방지 그물 등) 안전상태				
	난간의 흔들림				
비상 설비	화재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가스 설비	소화기	적정 보유 여부			
	비상구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유도등	파손, 변형, 탈락 상태			
	피난대피도	정상작동 여부			
	휴대용 비상조명등	배터리 교체 필요 여부			
전기 설비	가스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밸브	노후상태, 누출점검			
	배관	매설 및 고정상태			
	가스관	부식 및 손상여부			
전기 설비	안전표어	가스사용시주의사항등 부착여부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배선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체육시설 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함

부록 2. 안전점검 항목별 사례 자료

종류	불량한 사례 1	불량한 사례 2	양호한 상태
벽			
보			
창호			
슬래브			
응벽			

종류	불량한 사례 1	불량한 사례 2	양호한 상태
소화전			
비상통로			
비상구			

부록 3. 안내판 설치 및 피난안내도 작성 요령

1) 안내판 설치 요령

- 안내판이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다.
- 비상구, 대피경로, 소화기 위치, 응급처치시설, 입구, 주차장, 소방차 진입로 등을 표시한다.
- 위치 안내 및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비상시 관람객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장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비치하여 경기(행사) 예상 소요시간 및 협조사항을 알려주고 관중의 질서유지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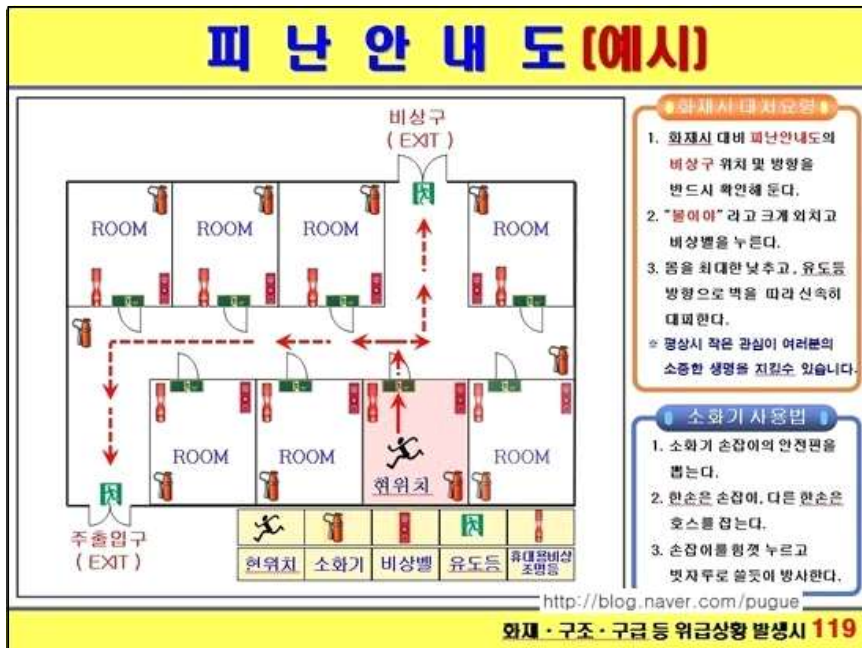
<그림> 안내표지 예시

2) 피난 안내도 작성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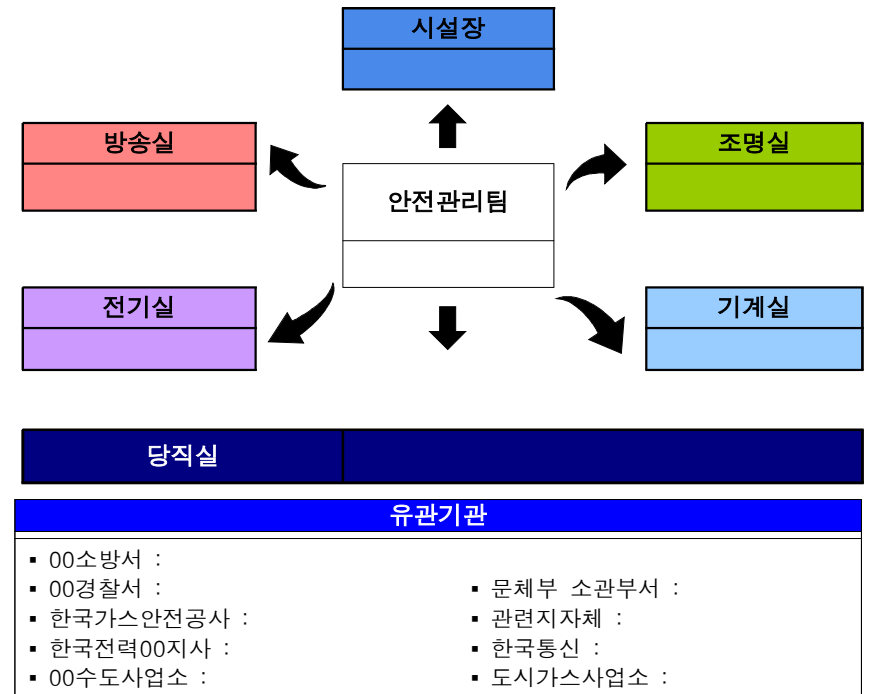
-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 안내도 위치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하여 둔다.

<그림> 피난안내도 예시



부록 4. 비상연락처 목록 작성 요령

- 비상연락처 목록을 작성하여 시설 내 주요 위치에 눈에 잘 띄게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비상연락처 목록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응급전화: 소방서, 경찰, 병원(가능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 시설지원기관: 전기, 가스, 교통 등
 - 주요부서: 방송실, 조명실, 전기실, 기계실 등
 - 책임자: 시설장, 시설관리 책임자 등(사무실, 집, 휴대전화 모두 기록한다.)
 - 보고대상: 지자체, 문체부 등 소관 부처
- 비상연락처 목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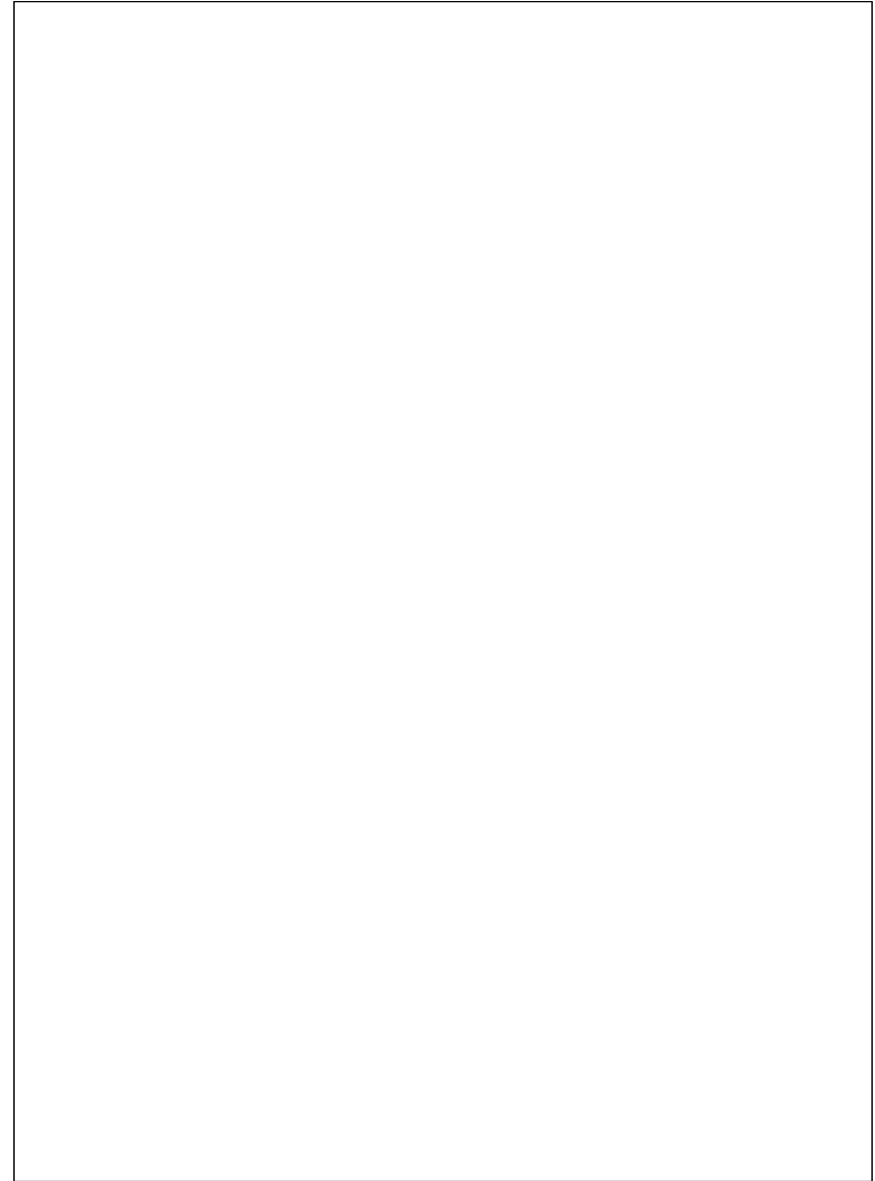
부록 5. 출동한 긴급서비스기관에 제공해야 할 자료(예시)

-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경찰·소방 등 긴급서비스기관의 출동이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건물의 구조와 수용인원, 잔류인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은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최소화에 도움이 된다.

1) 건축물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		주)				
						아)				
건물구조	본관: 0000 구조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승강기 0 개소, 피난계단수 0 개소, 비상구 00 개소									
화재보험 가입	가입연월일		회사명			가입 대상물	계약금액			
관계인	구분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종별									
	소유자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성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력	자격증종류	직책				
나. 동별·층별 현황										
동/층	명칭	건물용도 및 명칭	구조	내장물	층수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수용인원		
	합계									
층별										

2) 건축물 도면



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비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사용기간	비고
보일러				
온풍기				
가스렌지				
가연성가스 (도시가스)				
기타설비 (변압기)				

부록 6. 체육시설업 안전 기준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⁴⁾

종목	안전시설 기준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장업	해당내용 없음
스키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되,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절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절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빙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처: 체시법 시행령 별표 4

종목		안전시설 기준	
자동차 경주장 업	2류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류 자동차경주장업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사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마장업	해당내용 없음
		종합 체육시설업	해당내용 없음
수영장업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육도장업	해당내용 없음		
골프연습장업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력단련장업	해당내용 없음		
당구장업	해당내용 없음		
썰매장업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해당내용 없음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⁵⁾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1명이상
	◦ 골프코스 36홀 초과	2명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이상
수영장업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이상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이상
	◦ 50타석 초과	2명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출처: 체지방 시행령 별표 5

3) 안전 위생 기준⁶⁾

종목	안전 위생 기준	
공통기준	<p>(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p> <p>(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종류별 기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스키장업	<p>(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p> <p>(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 <p>(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p> <p>(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어를 요청할 때 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p>

종목	안전 위생 기준	
종류별 기준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p>(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p> <p>(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탐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p>
	자동차 경주장업	<p>(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탐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p> <p>(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p> <p>(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燃)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어를 요청할 때 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p>
종류별 기준	승마장업	<p>(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p>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수영장업	<p>(1) 수영장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p> <p>(2) 수영장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종류별 기준	수영장	<p>(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p>

6) 출처: 체시법 시행령 별표 6

종목	안전 위생 기준
	<p>한다.</p> <p>(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p> <p>㉞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p> <p>㉟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㊱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p> <p>㊲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㊳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인 것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p> <p>㊴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p> <p>(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p> <p>(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p> <p>(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p>
셀매장업	<p>(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 <p>(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3) 눈셀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p>(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p>
빙상장업	<p>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p>

부록 7. 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 조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건물의 경우:
(시특별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 정기점검
 -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1.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2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
2.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 등을 변경한 경우 및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완성/정기/수시검사에서 발견된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
4.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부록 8. 전기안전수칙7)

1) 시설 이용자 안전지키기

- 전기 콘센트가 헐거우면 접촉불량 되어 합선이나 화재위험성이 높아진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 쓸 때 위험하다.
- 가전제품을 만질 때 찌릿함을 느끼면 누전되고 있다는 증거다.
- 어린이 감전사고 90% 이상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생긴다.
- 위험한 고전압에 접근은 금한다.
-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됐는지 확인한다.
-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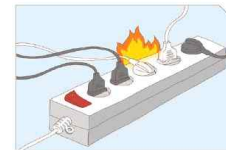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면 위험



차단기 정상작동 확인은 전기안전지키기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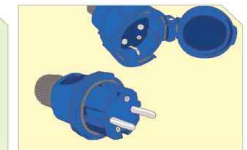
어린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사고가 1위



과다한 콘센트 연결은 화재와 직결



방수형 멀티콘센트



커버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

7) 출처: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2) 시설 관리자 안전지킴이

- 전기안전관리 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 전기안전관리 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 전선작업 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 전로를 개방 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용 사용전압에 맞는 검전기를 사용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 시는 정전 후 개방된 전원 측 전로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전기 공급상태에서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정전작업 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어린이 안전지킴이 수칙

- 전기줄을 가위로 자르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 전기제품의 전원 잭이나 건전지를 입에 넣지 않도록 교육한다.
- 깜빡이는 형광등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 전기줄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한다.
-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넣으면 위험함을 교육한다.
- 전선줄을 잡고 당기지 않도록 교육한다.
- 콘센트에 물을 뿌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 땅에 떨어져 있는 전선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부록 9. 가스안전수칙⁸⁾

1) 공통 안전수칙

- 연소가스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가스 연소기구는 수시로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불꽃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가스누출 점검 확인은 비눗물이나 주방세제를 사용하여 호스 주변에 발라 거품이 일어 나는지 확인한다.
- 가스 누설 시 선풍기나 전기제품을 활용하여 제거할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LPG 가스의 호스 연결부는 수시로 확인한다.
- 이사 때 가스 연결은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 연결토록 한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나 연통 구멍 등의 배기관련 부분은 수시로 확인한다.
- 휴대용의 경우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에 큰 그릇을 올려놓고 조리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 2개 휴대용 가스렌지를 공통 사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다.

2) 관리자 안전수칙

□ 위험요인에 의한 문제점

- 사람이 부재 시 가스기구의 밸브를 차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 실내에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행위나 실내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한 행위는 위험하다.
- 가스누설경보기나 차단장치가 미작동 되거나 설치되지 않았으면 위험하다.
-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물 방치 및 환기가 불량하면 위험하다.
- 용기와의 연결호스가 너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위험하다.
- 가스 보관 장소의 다른 인화물질 및 가연물이 혼재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 가스시설 주위의 소화기구 미비치 및 주방 후드 등 기름 때 등 청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8) 출처: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 위험해결 위한 안전수칙

- 가스시설 장소에 대한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사용을 통제한다.
- 가스용기는 실외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잠금장치 등을 통해 관리자와 접근을 통제한다.
- 시설 내 간이 가스용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스누설경보기와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가스시설을 사용한다.
- 가스사용 전에는 환기하고, 점화유무를 확인하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한다.
- 휴대용 가스통은 잔여가스 배출 후 구멍을 뚫어 폐기한다.
- 가스누설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한다.
- 호스보다는 배관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호스는 가급적 1m 이내의 길이로 사용한다.
- 가스용기 보관 장소에는 가스용기 외 다른 인화물질이나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 화기 사용 장소 주변에는 소화 기구를 비치한다.
- 주방후드 등의 기름때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3) 이용자 안전수칙

□ 이용자 위험요인

- 가스렌지,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기구를 취급 하면 위험하다.
- 가스밸브는 사용자 이외는 만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에 사용하는 가스통을 안전관리 한다.
- 가스 누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용자 위험요인 해소방안

- 가스 누설을 느낄 때 즉시 관리자에 알린다.
- 가스기구를 사용한 사람이 사용 후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 가스누출 여부의 확인은 냄새로 확인한다.

4) 가스 저장 용기

□ 저장용기 위험요인

- 저장용기의 설치장소가 미지정 되거나 다른 가연물질과 혼재하여 저장하면 위험하다.
- 화기 취급 장소 주변에 가스용기를 설치하거나 저장용기를 고정하지 않은 경우 위험하다.
- 가스 연결호스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하다.
- 빗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환하는 경우 위험하다.
- 가스종류에 맞지 않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경우 위험하다.

□ 저장용기 위험요인 해소방안

- 저장용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철저히 통제한다.
- "화기엄금" 표지를 설치하고 시건 장치로 보안 조치한다.
- 저장용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저장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화기 취급 장소에서 이격하여 별도 옥외에 보관한다.
- 호스는 지양하고 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가피한 경우 호스는 3m 이내로 설치한다.
- 옥외에 설치하지 말고 차광 및 빗물 등의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는 실내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허가자 외에는 임의조작 및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다.